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께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※ 2022.12.31.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예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·방법

구분	내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, 추가선택품목 계약서
납부기한 방법	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co.kr)·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유의사항

※ 인지세 15만원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)을 납입하시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계약 시 첨부 및 등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2022.12.31. 「인지세법」 제8조 일부개정예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※ 인지세 납부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, 계약자는 납부기한 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「인지세법」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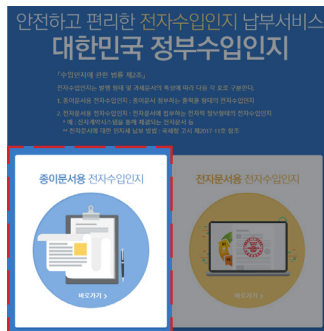
■ 인지세 온라인 구매 방법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

전자수입인지 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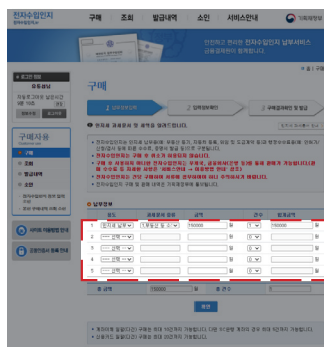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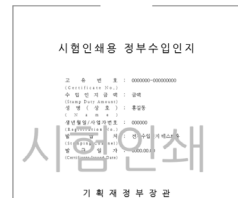
※ 00:30~22:00 동안 구입 가능

- ① 용도: **인지세 납부**
- ② 과세문서 종류: **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**
- ③ 금액: **15만원**
- ④ 건수: **1건**
- ⑤ 확인 및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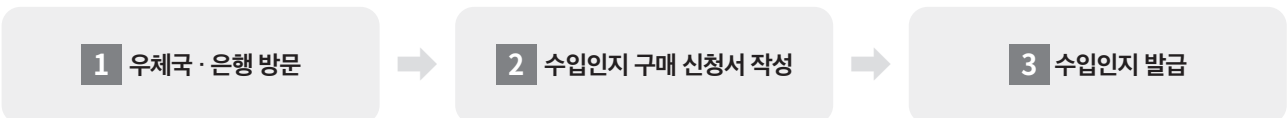


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** 하시기 바랍니다 (재발행 불가)



■ 인지세 오프라인 구매 방법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


(방문 전 우체국, 은행 지정별 영업시간 및 수입인지 구입가능여부가 다릅니다. 사전 확인 후 방문)